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
(Brain Pool) 사업 안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 국 학 술 진 흥 재 단

1. 사업개요

가. 추진근거 및 시행근거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추진)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5조 (재외과학기술자 국내유치 및 활용)
- 해외고급과학두뇌유치□활용(Brain Pool)사업 통합운영 기본방안
 - 2003년도부터 Brain Pool사업과 과학기술인력교류사업 통합
- '04.10 부터 Brain Pool 사업 주관 부처 변경
 - 과학기술부(과학재단)에서 교육인적자원부(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

◎ 시행근거

- '93. 07.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기술개발전략 부문으로 해외 고급과학두뇌 유치□활용(Brain Pool) 제도 계획 수립
- '94. 01. Brain Pool제도 설치, 운영방안 확정
- '94. 02. Brain Pool제도 시행
- '02. 10. Brain Pool사업 통합운영 기본방안 수립
- '03. 02. Brain Pool사업 통합에 따른 운영약관 개정

나. 목 적

-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해외교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조직적으로 초빙□활용, 연구개발단계의 최신과학기술 및 know-how등을 조기에 습득
- 세계적 수준의 해외과학기술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투입, 연구개발 수준을 높임으로써 선진국들의 핵심기술 이전 기피 등 기술보호주의 장벽을 타파하고 연구분위기 조성

다. 활용과제 및 분야

- 활용과제 :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에 필요한 국가전략적 추진과제로써, 해외고급과학두뇌 활용이 필요한 과제
- 활용분야 : 국가전략개발 대상 과학기술 모든 분야

기초분야	수학·물리학·화학·생물·지구과학·측정·표준·천문 등
기계·소재·항공우주분야	기계·선박·항공·우주·소재 등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	전기·동력·전자·컴퓨터·통신·광기술·응용물리 등
화학·생명 과학분야	응용화학·화학·생명공학·농수산·보건 등
자원·해양·환경·건설분야	자원·해양·환경·건설 등
에너지분야	원자력 등

라. 활용대상국가

- 전세계 국가

마. 초빙대상자 및 자격

- 해외거주자로서 박사학위 취득후 해외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외국인 및 교포 과학 기술자
- 학력이나 경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구개발 성과 또는 **Know-how**를 보유한 자의 경우 학력 및 경력 예외 인정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초빙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와 관계없이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자도 가능
- 첨단 과학기술 유치를 위해 팀 단위(2~5명)유치 가능

바. 활용대상기관 및 방법

- 활용대상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기관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
 -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중 특정 산업체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설립되고, 그 특정 산업체를 위하여 운영되는 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기준에 따름
- 활용방법
 - 기존 또는 신규 연구개발팀에 합류시켜 공동연구수행
 - 필요에 따라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전문분야 강의, 각종 학술회의 □세미나 참석 및 발표, 타 기관에 대한 기술자문 등은 가능

사. 활용기간

- 3개월 이상 2년 이내
- 초빙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2년 기한 만료 후 연장시 (최장 1년) 책정 체재비의 50%를 활용기관이 부담

아. 지원내용

(1) 체재비

- 초빙대상자의 연구경력 및 해당 국가에서의 현지보수, 과학논문 인용색인지수(SCI)저널논문 게재실적, 특허건수, 활용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한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

(2) 유치경비 [항공료, 이사비, 상해□질병보험 가입료 등]

- 항공료
 - Economy Class** 왕복 항공료 지원하며, 초빙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배우자의 왕복항공권 지원
- 이사비
 - 초빙기간 12개월 이상인 경우, 초빙대상자의 지역을 고려하여 입국시에만 차등 지급
- 상해□질병보험료
 - 초빙과학기술자 본인에 한하여 지원
 - 활용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가입 (담보 조건: 상해□사망□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 상해 의료실비□질병 치료비 각각 2천만원 / 사망시 운구 및 장례비 1천 만원으로 함)

자. 지원방식

- 체재비
 - 활용기관이 학술진흥재단과 협약을 맺고 **6개월**마다 체재비 지급
 - 활용기관은 초빙활용자에게 매월 월정액 지급
- 유치경비
 - 초빙대상자 입국 **1개월** 전 학술진흥재단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활용기관에 선지급
 - 활용기관은 선지급 받은 경비를 활용 종료시 정산하여 학술진흥재단에 전액 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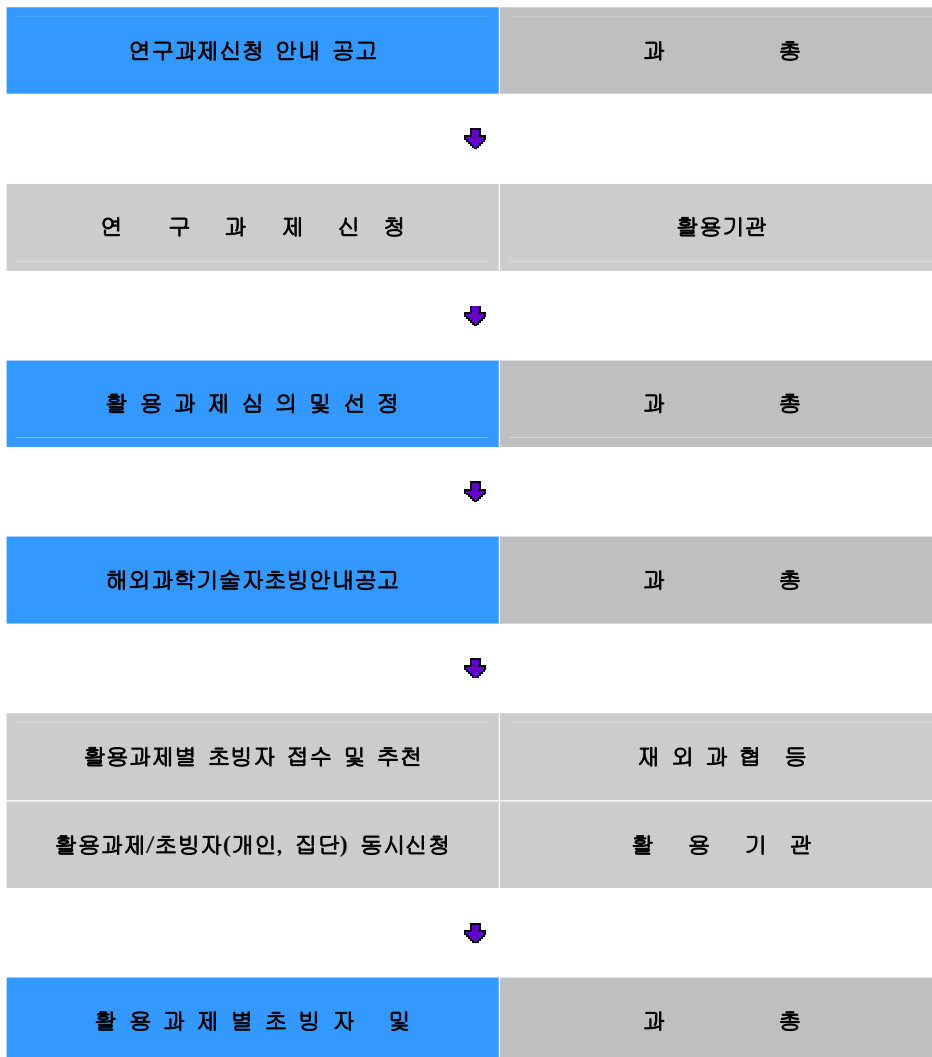
차. 평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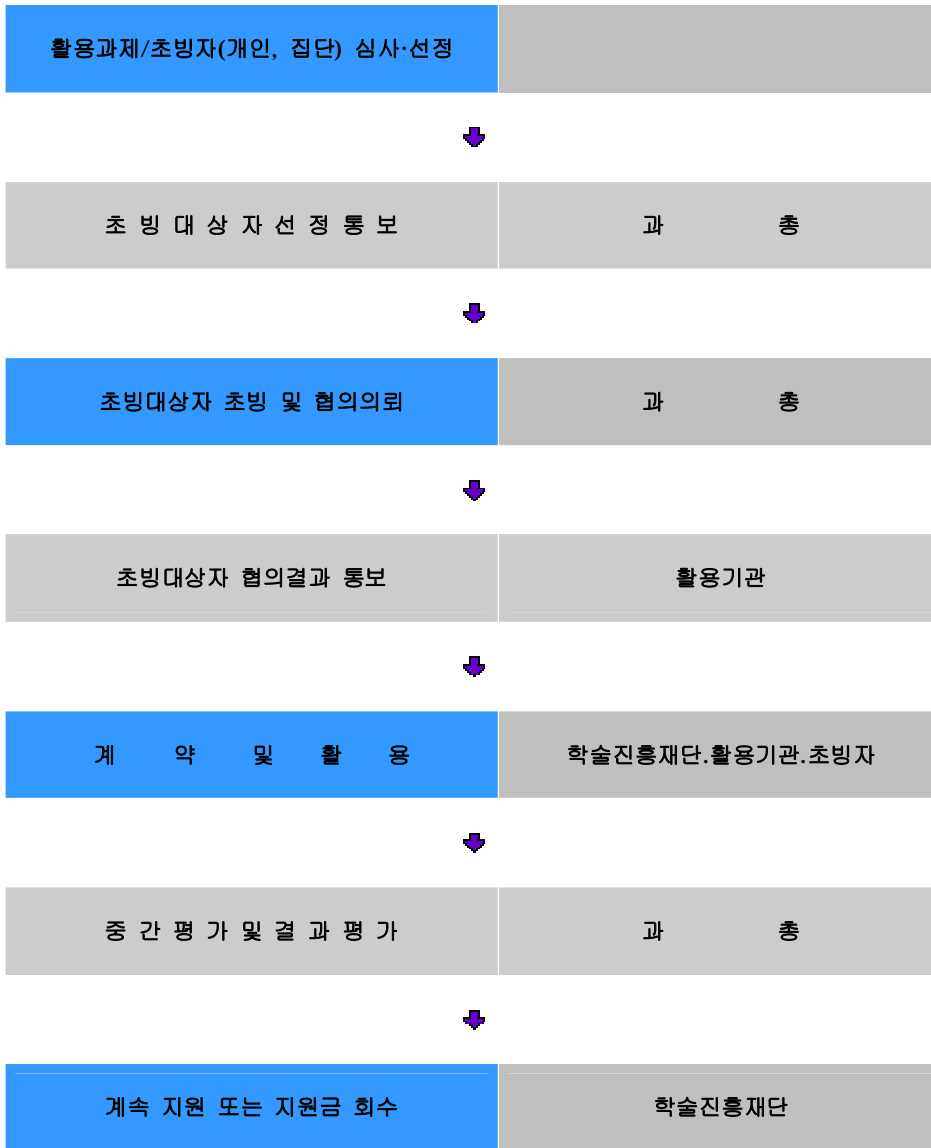
- 위원회에서 초빙과학기술자 등의 활동 실적에 대해 중간 평가(**1년** 단위) 및 활용 종료 시점에 결과 평가하여 ‘계속 지원’, ‘지원 중단’, ‘회수’ 여부를 결정

카. 추진체계(관리기관)

-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재단’ 이라 칭함) : 초빙과학기술자 경비 지원(협약 체결 및 청산), 자금 관리 등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이라 칭함) : 초빙과학기술자 선정, 평가 등, 사업운영 및 관리 등

타. 추진절차





※ 활용과제 신청 공고에서 초빙대상자 선정까지 5~6개월 정도 소요(연 2회 사업시행)
 - 활용과제와 초빙대상자를 동시에 선정하는 경우는 3개월 정도 소요

2. 신청방법

- 해외인력유치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지원신청서를 활용 희망기관이 과총에 서면 신청하거나 온라인 지원가능
 - 활용 희망기관은 3가지 모집방식 모두 신청 가능
 - ① 활용과제 지원 신청후 초빙대상자 지원 신청
 - ② 활용과제 및 초빙대상자 동시 지원 신청 (개인)
 - ③ 활용과제 및 초빙대상자 동시 지원 신청 (집단, 2- 5명)
- ※ 단, ②번과 ③번은 초빙대상자 지원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3. 초빙대상자 추천

가. 활용연구과제 선정 후 초빙대상자 선정 방식의 경우

- 재외한국과학기술자협회, 학술진흥재단 해외협력기관 등에 활용과제별 초빙대상자 공개모집 추천의뢰
[초빙대상자 본인 또는 활용기관에서 직접 신청 가능]
- 활용희망기관의 활용과제 연구책임자에게 해당과제의 적임자 추천 의뢰
- 인터넷 웹사이트(www.kofst.or.kr)에 활용과제리스트를 게재하고, 초빙대상자 공개모집
[활용과제는 활용기관에서 신청하여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

나. 활용연구과제 및 초빙대상자 동시 신청의 경우

1) 개인의 경우

- 활용기관에서 활용과제에 부합하는 초빙대상자를 직접 추천, 신청

2) 집단의 경우

- 활용기관에서 동일 활용과제에 2인 이상의 초빙대상자를 필요로 할 때, 2인 이상 5인 이하의 초빙대상자를 직접 추천, 신청

4. 활용지원신청

가. 활용연구과제 선정 후 초빙대상자 신청

- 국내 활용 희망기관의 활용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해외거주 과학기술자는 활용과제번호를 지정하여 거주지 재외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온라인 지원 가능
- 재외과협의 관할지역이 아닌 국가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특수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직접 과총에 제출 하거나 온라인 지원 가능

나. 활용연구과제 및 초빙대상자 동시 신청

1) 개인의 경우

- 활용기관에서 지원신청서를 일괄 작성하여 직접 과총에 제출 하거나 온라인 지원 가능

2) 집단의 경우

- 활용기관에서 지원신청서를 일괄 작성하여 직접 과총에 제출 하거나 온라인 지원 가능

5. 제출서류

가. 활용과제 지원 신청

- 활용과제 신청서 및 활용과제 세부추진계획서
- 산기협 발행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나. 초빙대상자 지원 신청

- 지원신청서
- 인적사항
- 이력서 [연구경력 및 실적 포함]
- 과학논문인용색인 (SCI) 지수저널 수록논문 게재편수 및 논문목록

- 특허권 [특허 건수 및 특허 취득번호 명기]
- 최종학위증명서 , 최종경력 및 재직증명서
-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 건강검진 진단서

다. 활용과제 및 초빙대상자 동시(개인) 지원 신청

- 지원신청서
- 가항, 나항의 제출서류와 동일
- 초빙대상자의 초빙 수락서

6. 접수 및 문의처

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진흥본부 국제협력팀

135- 70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 4 한국과학기술회관

☎: 02- 553- 2181 (ex 141) , Fax : 02- 563- 4931

E- mail add. : brain@kofst.or.kr

나. 해외과학기술자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

Region	Association	Address	Phone/Fax
A M E R I C A	The Korean- American Scientists & Engineers Association (KSEA)	1952 Gallows Road, Suite 300, Vienna, VA. 22182, USA (http://www.ksea.org)	T: 1)703- 748- 1221 F: 1)703- 748- 1331
	The Association of Korean - Canadian Scientists & Engineers (AKCSE)	1133 Leslie St. #206 North York, Ontario, M3C 2J6, CANADA (http://www.akcse.org)	T: 1)416- 449- 5204 F: 1)416- 449- 2875
E U R O P E	The Korean Scientists & Engineers Association in UK (KSEAUK)	KSEAUK, 3 Hampden, Broadhead Strand, London, NW9 5QA, UK (http://www.kseauk.org)	T: 44(20)- 8205- 2329 F: 44(20)- 8205- 2747
	Association des Scientifiques Coreens en France(ASCoF)	ASCoF (M Park) 14 bis, rue Boris Vlode, 92260 Fontenay aux Roses, France (http://www.ascof.org)	T: 33)1- 4091- 9523 F: 33)1- 3489- 6480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 V. (VeKNI)	VeKNI Konigstr. 48 52064 Aachen, Germany (http://www.vekni.org)	T: 49(241)559- 2514 F: 49(241)559- 2509

E U R O P E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Austria(KOSEA)	Simmeringer Platz 1/1/60, A- 1110, Vienna, Austria (http://www.koseaa.org)	T: 43)1- 941- 1875 F: 43)1- 941- 1875
-------------	---	---	--

J A P A N	The Korean Scientists & Engineers Association in Japan(KOSEA- J)	KOSEA Kaikan 4F, 1- 25- 10 Hamamatsu- Cho Minato- Ku, Tokyo 105- 0013, Japan (http://www.kosea-j.co.jp)	T: 81)3- 3437- 2774 F: 81)3- 5408- 5747
C H I N A	The Korean Scientists & Engineers Association in China (KSEAC)	No. 89 Aidan Road Yanji- City Jilin Prov, China E- mail : kcsea@public.yj.jl.cn	T: 86)433- 253- 6799 F: 86)433- 253- 6799
CIS	Association of Korean Scientific & Technological Societies of Russia (AKSTS CIS)	76- 1- 62, Dmitrovskoe shosse, Moscow, 127474 Russia, (http://www.antok.narod.ru)	T: 7(095)487- 6607 F: 7(095)487- 6607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Kazakhstan (Kahak)	125, Pushkina St., Alma- Aty, Kazakhstan E- mail : kahak@math.kz	T: 7(327)291- 3715 F: 7(327)291- 3715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Uzbekistan (Tinbo)	H. 52 T. Shevchenko Str., ashkent 700015 Uzbekistan	T:7(998712)564- 780 F:7(998712)688- 014
AUSTRALIA	The Korean Association of Science & Technology in Australia (KASTA)	47 John Street Lidcombe NSW 2141. Australia (http://www.kasta.org.au)	T: 61) 2- 9643- 9773 F: 61)2- 9749- 9817
KOREA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OFST)	635- 4, Yeoksam 1- dong, Gangnam- gu, Seoul 135- 703. Korea (http://www.kofst.or.kr)	T: 82) 2- 553- 2181 F: 82) 2- 563- 4931

7. 초빙대상자 선정 심사

가. 활용과제 선정 후 초빙대상자 선정 방식의 경우

- 분야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초빙인원 2배수 범위 이내로 초빙후보자 선정
- 총괄선정평가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체재비, 초빙기간 등을 포함하여 최종 초빙대상자 확정

나. 활용과제 및 초빙대상자 동시(개인, 집단) 신청의 경우

- 분야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신청과제의 타당성 및 유치활용 대상자의 적격성을 검토하여 선정
- 총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체재비, 초빙기간 등을 포함하여 초빙 과학기술자 최종확정

8. 선정결과 통보

- 선정 결과를 활용기관, 초빙과학기술자 [재외과협], 재단에 통보

9. 초빙계약 체결

- 활용기관의 장은 초빙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초빙과학기술자와 초빙 계약체결

10. 입국보고 및 활용계약 체결

- 활용기관의 장은 초빙과학기술자가 입국 즉시 입국보고서(서약서 첨부)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 , 공문으로 과총 및 재단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초빙활용계약을 재단과 체결해야 함
- 초빙과학기술자의 입국을 위한 사증 신청시 필요한 경우 E- 3(연구) 비자를 이용하기 바람. (과학기술부 [www.most.go.kr] 에서 Science Card 제도 이용)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국 www.moj.go.kr/immj Web Site 참조)

11. 보고서제출

가. 중간보고서

- 매 12개월 단위로 15일 전까지 활용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공문으로 재단(1부) 및 과총(3부)에 제출

나. 결과보고서

- 활용 종료후 1개월 이내에 활용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체재비 및 유치경비정산내역, 출입국사실증명원, 초빙과학기술자 관리카드 및 활동보고서
- [초빙과학기술자가 작성] 등이 첨부된 공문을 과총(3부) 및 재단(1부)에 각각 제출

12. 활용성과 평가 및 통보

- 과총은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 접수 후 활용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적정' 또는 '부적정' 판정을 한 후 '부적정' 판정의 경우 그 결과를 재단, 활용기관에 통보

13. 활용계획 변경

- 초빙과학기술자의 당초 활용계획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활용과제의 변경, 활용기간의 연장 및 단축 또는 중단, 활용과제 연구책임자 변경 등 활용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전 (활용 개시 또는 활용 종료 3개월 전)에 과총에 활용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총괄선정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14. 활용경비 지급

가. 체재비

-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
- 최초의 체재비는 입국보고 및 활용계약서 접수 후, 이후의 체재비는 활용기관의 체재비 지원요청 공문 접수 후 15일 이내에 활용기관장에게 지급
- 중소기업은 체재비의 90% 지원, 대기업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 집단 제외] 은 50% 지원
- 체재비는 《체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책정되나 선정인원, 초빙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총괄선정 평가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 등급별 체재비 책정기준 >

(단위 : 천원)

등 급	지원액(월)	비 고
특 급 (90점 이상)	4,500~5,000	※ 특급은 활용기관이 신청하면 분야별위원회를 거쳐 총괄위에서 최종 심사하여 결정 ※ 7등급은 집단활용 등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1 등급 (90점 이상)	4,000	
2 등급 (80 ~ 89점)	3,700	
3 등급 (70 ~ 79점)	3,400	
4 등급 (60 ~ 69점)	3,100	
5 등급 (50 ~ 59점)	2,800	
6 등급 (40 ~ 49점)	2,500	
7 등급 (40점 미만)	2,000	

나. 유치경비 (항공료, 이사비, 상해□질병보험료)

- 유치경비는 지역별□활용기관별 책정기준에 의거 일괄 선 지급함
- 활용기관은 초빙과학기술자 입국 1개월 전에 정확한 입국일자를 기입하여 공문으로 재단에 신청하여 지급 받은 후 활용 종료 시 정산하며 잔액은 재단에 반납.

< 유치경비의 지역별 · 활용기간별 책정기준 >

(단위 : 천원)

지역	6개월이상 활용자	6개월미만 활용자	3개월이하 활용자	기업국자
일본, 중국, 대만	2,700	1,900	1,350	1,100
기타 아시아지역	4,000	2,800	2,000	1,600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동, 미국(서부), 호주	4,500	3,150	2,250	1,800
미국(중·동부), 서유럽,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5,000	3,500	2,500	2,000
스칸디나비아, 동유럽, 중남미, 기타 CIS지역, 아프리카	5,500	3,850	2,750	2,200

1) 항공료

- 지원대상은 초빙과학기술자 및 배우자이며, 활용기관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배우자 항공료는 지원하지 아니함.
- 항공료는 최단 직항로로 계산한 **Economy Class** 정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나 초빙과학기술자가 자비로 구입한 항공료는 **Economy Class** 항공료와 비교하여 적은 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함.
- 활용계획 변경(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일시 귀국 항공료는 지원하지 아니함.
- 초빙과학기술자가 상해□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활용이 중단되는 경우 가족 2인 이내 (배우자 포함)에서 귀국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음.

2) 이사비

- 초빙대상자의 초빙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초빙지역에 따라 입국시에만 지원하고 추후 정산함

이사비용지원기준 (단위 : 천원)	
지역	지원액
유럽및 동구지역	900
북미, 호주지역	800
일본, 중국지역	400

3) 상해□질병보험료

- 초빙과학기술자 활용기간 동안의 상해□질병보험을 활용기관에서 가입하고 보험 영수증을 첨부하여 추후 정산함.
- 상해□질병보험의 담보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해□사망□후유 장애시 최고 1억원까지 지원
 - 상해 의료실비□질병 치료비 각각 2천만원까지 지원
 - 사망시 운구 및 장례비 1천만원까지 지원

15. 활용기간 중 해외출장

- 활용기간은 초빙과학기술자가 활용기간 중 해외출장(공무 및 개인용무 포함)을 하고자 할 경우 사유 등을 기재한 출장신청서를 사전에 재단과 과총에 통보하여야 하고, 아울러 입국후 7일 이내에 여권 사본(입□출국 확인도장 날인)과 자세한 일정별 활동내용을 정리한 출장보고서를 재단과 과총에 제출하여야 함
-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사전 통보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일시귀국의 경우에는 사후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무출장 관련여부는 분야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결과를 활용기관에 통보함.

<초빙과학기술자 일시귀국 허용일수>

활용기간	유급휴가일	활용기간	유급휴가일	활용기간	유급휴가일
3개월 까지	5일	13개월 까지	22일	25개월 까지	42일
4개월 까지	7일	14개월 까지	24일	26개월 까지	44일
5개월 까지	9일	15개월 까지	26일	27개월 까지	46일
6개월 까지	10일	16개월 까지	28일	28개월 까지	48일
7개월 까지	12일	17개월 까지	29일	29개월 까지	49일
8개월 까지	14일	18개월 까지	30일	30개월 까지	50일
9개월 까지	16일	19개월 까지	32일	31개월 까지	52일
10개월 까지	18일	20개월 까지	34일	32개월 까지	54일
11개월 까지	19일	21개월 까지	36일	33개월 까지	56일
12개월 까지	20일	22개월 까지	38일	34개월 까지	58일
		23개월 까지	39일	35개월 까지	59일
		24개월 까지	40일	36개월 까지	60일
비고	※ 유급휴가일은 1년 단위로 함. ※ 연가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며,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음 (예시 : 활용기간이 2년인 경우 총 40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1차년도 20일, 2차년도 20일을 각각 사용할 수 있음)				

16. 체재비 및 유치경비의 정산

- 선 지급받은 유치경비는 항공료, 이사비, 상해□질병보험료 등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초빙과학기술자 활용종료 후 정산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활용기간이 만료된 초빙과학기술자가 활용 종료 예정일보다 조기 귀국하는 경우 사후 정리기간을 인정하나 그 기간은 유급휴가 허용일수 이내로 함.
- 초빙과학기술자 활용기간 중 유급휴가의 통산기간은 “초빙과학기술자의 유급휴가 허용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초빙과학기술자가 활용을 중단하거나 직접적으로 활용과제와 관련 없이 해외 출장한 경우에는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체재비를 반납하여야 함
- 활용기간 중단기간 및 유급휴가 허용일수 초과분에 대한 경비의 정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30일) 계산하여 반납
- 연가일수 산정시 입□출국일에 해당하는 2일은 1일로 계산하며 활용기관의 휴무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함

- 유급휴가 허용일수 초과에 대한 체재비 환수는 활용기관에 청구하게 되므로 활용기관에서는 일시귀국 관련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체재비 반납 계좌번호 :
농협 1143- 17- 003601 한국학술진흥재단

17. 활용지원 중단 및 자금 회수

가. 다음의 각 호의 경우 초빙과학기술자에 대한 경비 지원을 중단함.

- 1) 국가에 대하여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단, 형사상 소추에 의함)
- 2) 초빙과학기술자가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거나 목적 달성에 고의로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총괄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3) 활용지원신청서 및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4) 평가결과 '부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
- 5) 활용과제가 중단된 경우
- 6) 기타 활용기관장 또는 초빙과학기술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 7) 초빙과학기술자가 활용기관에 취업한 경우
- 8)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적 연구 활동이 곤란한 경우

나. 전호의 사유로 인해 총괄선정평가위원회가 지원 중단을 결정할 경우 지급된 경비를 활용기관으로부터 회수함 (자금회수 구분은 【운영약관】 참조)

18. 활용기관의 준수사항

본 사업에 의하여 해외과학기술자를 초빙 활용하는 활용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활용기관의 장이 짐.

- 가. 본 사업의 운영약관 및 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나. 재단과 체결한 초빙과학기술자 활용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다. 초빙과학기술자와 관련된 행정처리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함
- 라. 초빙과학기술자 활용은 선정 통보 후 반드시 1년 이내 시작되어야 함
- 마. 초빙과학기술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상해□질병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19. 연구결과 사후관리

- 가. 연구결과 발표물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저척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활용함
 -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과 「기술이전촉진법」 에 의해 국공립대학 소속 교수의 직무발명 관련 산업재산권은 산학협력단 또는 기술이전 전담 조직의 소유로 함
- 다. 초사립대학 소속 활용책임자가 참여한 연구과제에 의해 취득한 산업재산권도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연구결과 논문 또는 저서 등에 관한 저작권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소속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활용책임자 및 공동활용자 등에 대한 보상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소속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함

바. 연구결과 발표물에는 아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정부 자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and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Grant funded by Korea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